

# 24년 3월 주요 정책 및 제도

행정예고 : 1 | 입법예고 : 8 | 개정고시 : 1

(사)한국식품안전협회

No	항목	법규 및 고시	구분	주요 내용	시행일 (의견)	유예	CHECK
1	건강기능 식품	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제 2024-16호	24.3.20 개정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-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</li> <li>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-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</li> <li>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-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-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</li> </ul>	고시한 날 부터 시행		
2	건강기능 식품	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공고 제 2024-127호	24.3.19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「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」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</li> <li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·평가한 당해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해 우수영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4.29까지 의견제출)		
3	건강기능 식품	「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」 공고 제 2024-128호	24.3.19 행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-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총리령 상향 규정됨에 따라 조사·평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정비하여 이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</li> <li>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 -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소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·평가 시 가점을 받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</li> <li>우수영업소 선정기준 및 관리 -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정기 조사·평가 점수가 백분율이 95% 이상인 경우 우수영업소로 선정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4.29까지 의견제출)		
4	식품	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공고 제 2024-138호	24.3.21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신설 및 명칭변경) - 제13조제1항 "금액" → "금액의 2배" 상향조정 - 제13조제3항 신설 - 제13조제4항 "제1항 및 제2항" →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 - 제15조제1항 신설 등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4.30까지 의견제출)		
5	식품	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공고 제 2024-139호	24.3.21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·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하고, 권고에 따라 표시·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</li> <li>일부 시행령 신설 -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4.30까지 의견제출)		
6	축산물	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공고 제 2024-144호	24.3.22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신설 및 명칭변경) - 제26조제3항 "금액으로" → "금액의 2배" 상향조정 - 제26조제3항 신설 - 별표3의2 신설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5.1까지 의견제출)		
7	수입식품	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공고 제 2024-147호	24.3.26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신설 및 명칭변경) - 제10조제2항 "납부하여야" → "납부해야" 변경 및 같은 항 단서 삭제 - 제10조제3항 "하여야 하며" → "하며" - 제12조제1항 "금액으로" → "금액의 2배" 상향조정 - 제12조제4항 신설 -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</li> </ul>	24. 7. 3 부터 시행 (24.5.7까지 의견제출)	1. 제10조의 개정규정 : 공포한 날부터 시행	
8	수입식품	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공고 제 2024-148호	24.3.26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</li> <li>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함</li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신설 및 명칭변경)</li> </ul>	24. 8. 7 부터 시행 (24.5.7까지 의견제출)		
9	식품	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공고 제 2024-156호	24.3.27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삭제 및 명칭변경) - 제32조 삭제 - 제57조제1항 "금액으로" → "금액의 2배" 상향조정 - 제3항 신설 - 별표 1의2 신설 - 제61조제1항제11호 "우수업소와" → "따른"</li> </ul>	공포한 날 부터 시행 (24.5.8까지 의견제출)	1. 제57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 별표1의2 : 2024.7.24부터 시행	
10	식품	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공고 제 2024-157호	24.3.27 입법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부 시행령 개정(삭제 및 명칭변경) - 별표 23 II 제3호 제15호 신설 - 별표 23 III 제3호 아목 신설 - 별표 23 III 제4호 "사육" → "사육,아목"</li> </ul>	24. 8. 7 부터 시행 (24.5.8까지 의견제출)		